

전자서명수단 지정서

「상업등기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제67조제4항제2호, 「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제50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”를 다음의 전자서명수단으로 한다.

1. 지정 전자서명수단

아래 5개 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

- ① 한국정보인증 (<https://www.signgate.com>)
- ② 코스콤 (<https://www.koscom.co.kr>)
- ③ 한국전자인증 (<https://www.crosscert.com>)
- ④ 한국무역정보통신 (<https://www.tradesign.net>)
- ⑤ 금융결제원 (<https://www.yesign.or.kr>)

2. 지정 후 공고 방식: 인터넷등기소에 게시

3. 시행 시기: 2021. 6. 10.

법 원 행 정 처 장